

Samjong Focus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August 2025

KPMG 관세법인

—
home.kpmg/kr

Executive Summary

- ✓ 2025년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전격 타결
- ✓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고, 한국은 미국에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LNG 등 에너지 구매를 약속
- ✓ 큰 틀에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양국간 해석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세부 협상 또한 이어질 예정이라 산업별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1. 美 행정부 추가 관세 부과 Timeline

-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패권 강화를 목표로 다각도의 국제/인플레이션/국가재정수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관세율 정책 시행
- 4월 2일 전세계 대상 보편적 증가세율 및 특정국가별 차등 증가세율 부과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나, 특정국가별 세율은 8/1까지 유예되었고, 7월까지 각 국가 협상에 따라 정해진 수정 관세율을 8월 7일부터 부과 예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철강/ 알루미늄관세		25% 부과 (3/12~)			50% 부과 (6/4~)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자동차 25% 부 과 (4/3~)	자동차부품 25% 부과 (5/3~)			
구리 관세						50% 부과 예정 발표 (7/8)	50% 부과 (8/1~)
對캐나다 추가관세		10~25% 부과 (3/4~) 염화칼륨 25% → 10% 인하 (3/6)	USMCA 총족 물품 유예 발표 (4/3~)				
對멕시코 추가관세		10~25% 부과 (3/4~)	USMCA 총족 물품 유예 발표 (4/3~)				
對중국 추가관세	펜타닐 근거 10% 부과 (2/4~)	10%→20% 인 상 (3/4~)	총 145% 까지 상향	30% 관세 조정 - 제네바합의 (5/14~ 90일간)	중국 희토류 공 급/미국 중국 학생 유학 허용 - 런던 합의		
보편관세			10% 부과 (4/5~7/8 유예)				
상호관세			국가별 차등 관 세 (4/9~7/8 유예)			유예 및 부과 서 한 발송 (7/7), 행정명령 발표 (7/31)	국가별 상호관 세 부과(8/7~)
對영국관세				협상 타결 (5/8)	철강/알루미늄 25% (6/4~), 자동차/부품 10%(6/30~)		
국가별 관세 협상 타결						베트남(7/2), 일본/필리핀/인 도네시아(7/22), EU (7/27), 한 국 (7/30)	

2. 한·미 무역협상 내용 분석

2.1. 7/30 한·미 무역협상 내용

- (상호관세)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하향 조정 (25%→15%)
- (자동차 관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하향 조정 (25%→15%)
 - EU는 (인하된 제 232조 관세)12.5%+(기본 관세)2.5%=Total 15%로 합의하였으며,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은 Total 12.5% 관세를 주장하였으나 끝내 15%로 타결
- (그 외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구리 기존의 50% 품목별 관세가 지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
- (기타) ① 미국산 수입품 대상 무관세, ②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농산물 개방, ③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한국 출자 투자 펀드 구성,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협력 전용 펀드 및 2,000억 달러 규모 반도체·바이오 등 펀드), ④ 1,000억 달러 규모 LNG 등 에너지 구매

2.2. 주요 국가 협상 내용 비교

구분		한국	EU	일본
경제규모(\$) ¹⁾		약 1.87조	약 19.41조	약 4.26조
수출액 (\$) ²⁾	전체	6,837억	약 2조 8000억	약 7,223억
	對美	1,278억	5,766억	1,482억
美 무역수지(\$) ³⁾		-660억	-2,356억	-685억
美 수입시장 내 비율 ³⁾		4.03%	18.51%	4.54%
상호 관세율	종전(4/2)	25%	20%	24%
	협상 후	15%	15%	15%
	차이	10%p △	5%p △	9%p △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25% → 15% (10%p△)	27.5% → 15% (12.5%p△)	
철강/알루미늄 관세 ⁴⁾		별도 논의 진행하지 않아 50% 유지 예상	50% (쿼터 합의 관련 논의 중)	별도 논의 진행하지 않아 50% 유지 예상
對美 투자금액 (\$)		3,500억 (경제규모 대비 21%)	6,000억 (경제규모 대비 3%)	5,500억 (경제규모 대비 13%)
주요 협상 내용		▪ 한국 미국에 \$3,500억 투자 및 \$1,000억 규모 에너지 구매(LNG 등) ▪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 한국 시장에 무관세 개방	▪ EU 향후 3년에 걸쳐 미국에 \$6,000억 투자 및 \$7,500억 규모 미국산 LNG 구매 ▪ 단,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유지, 일부 병입품, 제약, 비행기 부품, 반도체 장비는 관세 면제 또는 별도 처리	▪ 일본 미국에 \$5,500억 투자 ▪ 자동차, 트럭, 농산물(쌀 포함) 시장 개방 ▪ 미국산 농산물(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연료 등) 수입 확대 및 군수, 항공기 구매 약속

1) IMF 2024년 명목 GDP 기준 2) 2024년 기준, Eurostat, 한국무역협회 3) 미 상무부, KOTRA 4) 7/31 정책실장 브리핑

3.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3.1. 7/31 상호관세 행정명령 내용 분석

1)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미국 국가안보 및 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
- 이에 따라, 2025년 4월 2일 선포된 국가비상사태(Executive Order 14257)를 유지하며, 무역상대국들의 협상 태도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정렬 수준에 따라 국가별 차등 조치를 시행

2) 주요 조치 사항: 관세율 조정 (Annex I)

- 총 약 80개국 및 지역 대상(한국·일본·EU 등 주요국도 포함됨)
- 국가별로 10%~41%의 추가 부가 관세(ad valorem) 부과 → Annex I에 명시
-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종전 행정명령 14257에 따라 10% 관세(ad valorem) 부과

3) 환적(transshipment) 차단 강화

- 환적을 통한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 관세에 40% 징벌적 관세 추가 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벌금·세금·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 감경/면제 불가
-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의심국 및 시설 리스트 발표 → 정부조달·안보심사·상업적 실사 등에 반영

4) 적용 시점 및 이행

- 발효 시점: 명령 발표일 기준 7일 후 (2025년 8월 7일 00:01 EDT부터)
- 단, 명령 발표일 기준 7일 이내 (2025년 8월 7일 00:01 EDT) 최종 운송 수단에 선적되어, 2025년 10월 5일 이전 소비를 위해 반출되는 물품은 종전 관세율(10%) 유지

5) 외교적 여지 및 추가 조치 가능성

- 미국과 협정 체결 국가는 추후 협정에 따라 관세 조정 가능
- 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미국과의 합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 추가적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 내포

6) 법적 기반

- IEEPA, 국가비상사태법, 무역법 604조, 미국법전 제3편 301조 등에 근거

3.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3.2. 7/31 상호관세 행정명령 시사점

1) 8/7 12:01a.m. 이전까지 10% 상호관세율 적용

- 기존 행정명령 상 8/1까지 10% Baseline 상호관세율 적용
- 금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은 8/7 12:01a.m.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 8/1~8/7 12:01a.m.에 대해 10% 상호관세율 적용됨

2) FTA 미체결 국가에 대한 최종적인 관세율

- 상호관세는 행정명령 14257 Section 3.(c)에 따라 기존의 관세, 수수료, 세금, 부과금 또는 기타 요금에 추가로 부과
- 금번 행정명령 Annex II에도 금번 상호관세는 기존의 관세율에 추가(누적)하여 부과하는 형태
- EU의 경우 Column 1(이하 “MFN 세율”)에 따른 세율이 상호관세율(15%)을 초과할 경우 추가 상호관세가 없고, MFN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상호관세가 [15%-MFN세율]로 부과되어 MFN 세율과 상호관세 합계 Ceiling이 15%로 설정
- 그러나 EU와 동일하게 상호관세 15%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율이 일괄 15%로 기재되어 최종적인 관세율이 [MFN 세율+(상호관세) 15%]로 산정
- 예시: 기본세율 2.5%인 품목인 경우
EU 최종관세율:15% / 일본 최종관세율:17.5% / 한국 최종관세율: 15%(한-미 FTA 적용시)
→ 일본 대비 2.5% 가격경쟁력 발생

※ 본 해석은 한국 시각 기준 2025년 8월 1일 오전에 발표된 행정명령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관련 행정명령이 개정되거나 후속 명령이 발령될 경우 그 해석 및 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Severability (Section 6) 조항 신설

-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만약 이 명령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조항의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명령 조항 및 그 적용은 계속 유효하다.
- 본 행정명령 중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될 경우 전체 명령이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문구로서, 이전 4/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구
- 올해 5월 CIT(국제무역법원)가 I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무제한 권한 행사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와 같은 사법 심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

[별첨 1] 美 상호관세 행정명령 Annex I: 대상 국가별 관세율

국가 및 지역	상호 관세율(조정)	국가 및 지역	상호 관세율(조정)
아프가니스탄	15%	마다가스카르	15%
알제리	30%	말라위	15%
앙골라	15%	말레이시아	19%
방글라데시	20%	모리셔스	15%
볼리비아	15%	몰도바	2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모잠비크	15%
보츠와나	15%	미얀마	40%
브라질	10%	나미비아	15%
브루나이	25%	나우루	15%
캄보디아	19%	뉴질랜드	15%
카메룬	15%	니카라과	18%
차드	15%	나이지리아	15%
코스타리카	15%	북마케도니아	15%
코트디부아르	15%	노르웨이	15%
콩고민주공화국	15%	파키스탄	19%
에콰도르	15%	파푸아뉴기니	15%
적도기니	15%	필리핀	19%
유럽연합 (Goods with Column 1 Duty Rate > 15%)	0%	세르비아	35%
유럽연합 (Goods with Column 1 Duty Rate < 15%)	15% minus Column 1 Duty Rate	남아프리카공화국	30%
포클랜드제도	10%	대한민국	15%
피지	15%	스리랑카	20%
가나	15%	스위스	39%
가이아나	15%	시리아	41%
아이슬란드	15%	대만	20%
인도	25%	태국	19%
인도네시아	19%	트리니다드토바고	15%
이라크	35%	튀니지	25%
이스라엘	15%	튀르키예	15%
일본	15%	우간다	15%
요르단	15%	영국	10%
카자흐스탄	25%	바누아투	15%
라오스	40%	베네수엘라	15%
레소토	15%	베트남	20%
리비아	30%	잠비아	15%
리히텐슈타인	15%	짐바브웨	15%

[별첨 2] 2025년 8월 1일 기준 부과현황

행정명령		근거 법령	부과대상 물품		증가 세율	시행일 (美 동부 표준시)	부과현황	
철강		232조	관보에 HS 코드가 특게된 물품		50%	3월 12일 ~ 현재	발효 중 (●)	
알루미늄			관보에 HS 코드가 특게된 물품		50%	3월 12일 ~ 현재	발효 중 (●)	
구리			관보에 HS 코드가 특게된 물품		50%	8월 1일 ~ 현재	발효 중 (●)	
자동차			관보에 HS 코드가 특게된 물품 (USMCA 충족 시 Non-U.S. Content만 적용)		25%	4월 3일 ~ 현재	발효 중 (●)	
자동차 부품			관보에 HS 코드가 특게된 물품		25%	5월 3일 ~ 현재	발효 중 (●)	
對캐나다 추가관세		IEEPA	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 는 캐나다産 물품	에너지 자원	10%	4월 3일 ~	유예 중 (●)	
				그 밖의 모든 물품	25%	4월 3일 ~	유예 중 (●)	
			그 밖의 캐나다産 모든 물품 (= USMCA 미충족 물품)	에너지 자원	10%	3월 4일 ~ 현재	발효 중 (●)	
				염화 칼륨 (Potash)	10%	3월 4일 ~ 현재	발효 중 (●)	
				그 밖의 모든 물품	35%	8월 1일 ~ 현재	발효 중 (●)	
對멕시코 추가관세			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는 멕시코産 물품		25%	4월 3일 ~	유예 중 (●)	
			그 밖의 멕시코 産 모든 물품	염화 칼륨 (Potash)	10%	3월 4일 ~ 현재	발효 중 (●)	
				그 밖의 물품	25%	3월 4일 ~ 현재	발효 중 (●)	
對중국 추가 관세		301조	모든 중국産 물품 (제네바 협상에 따라 5/14부터 90일간 10% 상호관세 + 20% 펜타닐 관세 적용)		30%	2월 4일 ~ 현재	발효 중 (●)	
			(참고) 기존 보복관세 25% 부과 중 - HS 코드가 특게된 물품		25%	2019년 ~ 현재	발효 중 (●)	
보편관세		주요 국 가	IEEPA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10%	4월 5일 ~	발효 중 (●)
상호관세				부속서에 열거된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국가별 차등*	8월 7일 ~	부과예정 (●)
	對영국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7월 9일 이후 영국이 경제협약(EPD)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 인상 가능)		25%	6월 4일 ~ 현재	발효 중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연간 100,000대 한정 할당제, 소급 적용 불가)		10%	6월 30일 ~ 현재	발효 중 (●)
	對한국			모든 한국産 물품		15%	8월 7일 ~	발효 중 (●)
	對EU			모든 EU産 물품		15%	8월 7일 ~	부과예정(●)
	對일본			모든 일본産 물품		15%	8월 7일 ~	부과예정(●)
	對베트 남			모든 베트남産 물품		20%	8월 7일 ~	부과예정(●)
	對인도 네시아			모든 인도네시아産 물품		19%	8월 7일 ~	부과예정(●)
	對필리 핀			모든 필리핀産 물품		19%	8월 7일 ~	부과예정(●)

*국가별 관세율 상세 내용은 별첨 Annex I 참고



Business Contacts

KPMG 관세법인

강길원 부대표
T 02-2112-0907
E gilwonkang@kr.kpmg.com

김태주 전무
T 02-2112-7448
E taejookim@kr.kpmg.com

오영빈 상무
T 02-2112-0435
E youngbinoh@kr.kpmg.com

김민철 상무
T 02-2112-6677
E minchulkim@kr.kpmg.com

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